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2188 제출연월일: 2024. 7. 24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혁신금융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표창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0조의2(포상) 금융위원회는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혁신금융서 비스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30조의2(포상) 금융위원회는 적
	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혁신
	금융서비스 관련 산업 활성화에
	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
	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	
		금융위원회는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산업		
1	제30조의2(포상)	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		
		다.		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제30조의2(포상)	제1호 :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 미만 - 포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경우로, 추가적인 재정 지출이 수반되지 않음 추후 포상금을 지급을 추진하더라도 그 예산은 소액임

2. 상세 사유

- 제30조의2(포상)은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포상을 할 수 있 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경우로, 추가적인 재정지출이 반드시 수반되지는 않음. 추 후 포상금 지급을 추진하더라도 그 예산은 소액임
 - ※ 연 2명 포상, 1명당 1,000,000원의 포상금 지급 가정시 연평균 2,000,000원 가량으로 기준액인 10 억원의 0.2%에 불과

Ⅲ. 부대의견

O 해당 없음

Ⅳ. 작성자

O 성명

사무관	팀장	국장
김예빈	김보균	전요섭

O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예빈	02-2100-2859	yebinkim@korea.kr